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일: 2022.02.23

제정일: 2006.09.01

담당부서: 경영전문대학원 - 행정팀(02-2123-249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경영학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며, 창의적이고 윤리적이며 국제적 시각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① 본 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

② 석사학위과정은 Corporate MBA, Finance MBA, Global MBA, Executive MBA과정을 둔다. <개정 2022.02.23, 2009.10.01, 2007.12.17, 2007.5.17.>

③ 최고경영자과정은 공개강좌로 운영하며 이의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며 석사학위(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4.5.30.>

제3조 (정원) ①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연간 257명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재교육형)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30.>

제3조의 2 (소재) 본원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둔다. [본조 신설 2009.10.01.]

제2장 조 칙

제4조 (직제) 본 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제5조 (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원에는 경영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경영전문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04.04., 2010.02.22>

제5조의 2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본원과 계약대상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14.5.30.]

제6조 (위원회 위원임기)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위과정의 신설, 변경,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입학, 졸업 및 수료, 상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04.>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의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석사 · 박사 · 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 ·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2015.04.12.>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 학

- 제9조 (입학)** ① 본 원은 과정별로 Corporate MBA, Finance MBA, Executive MBA과정은 매년 봄 학기 신입생을 선발하며, Global MBA과정은 가을 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2.02.23, 2009.10.01, 2007.12.17.>
②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봄학기 또는 가을 학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신설 2014.5.30.>

- 제10조 (입학자격)** ① 본 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4.>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위 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계약학과 신입생은 위 1항을 충족하면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5.30.>

제11조 (지원절차) 본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관련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입학전형) 신입생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13조 (입학정원 외 입학) 법령 및 본교 학칙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허가) 입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5조 (입학금)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5.30.>

제17조 (등록학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이수 및 각종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하거나 자퇴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반환은 산업체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설 2014.5.30.>

제19조 (휴학) ①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 휴학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

③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산업체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한다. <신설 2014.5.30.>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6.5.1.>

제20조 (입대휴학)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 할 수 없는 경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 (복학) 휴학사유가 종료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가. 학기 평량평균이 두 차례 연속 2.0 이하인 자. 단, Global MBA과정의 경우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7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 처리함. 본조 본항에 적용하는 학기는 26조에도 불구하고, 여름, 겨울학기를 직전 봄, 가을학기에 포함하여 각 1개 학기로 간주함. <개정 2022.02.23, 2015.10.07., 2010.02.22., 신설 2009.04.28>

나. 학력과 경력 등 입학 제출 서류를 위조한 자 <개정 2015.10.07. 신설 2009.04.28>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5.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본 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6. 재학 연한 만료자
 7. 본인 사망
- ② 전항 5호의 경우 징계를 통하여 제적 처리한다.

제23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원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제2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2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재입학은 허가 할 수 없다. <개정 2018.04.04.>
②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과 관한 사항은 산업체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설 2014.5.30.>

제5장 수업, 학점, 학위수여

제25조 (수업연한) ① Global MBA과정의 수업연한은 18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3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02.23, 2009.10.01.>
② Corporate MBA, Finance MBA, Executive MBA과정의 수업연한은 24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02.23, 2009.01.15>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4.5.30.>
[전문개정 2007. 12. 17.]

제26조 (학기) ① 석사과정의 학기는 연간 4개 학기로 운영한다. <개정 2007. 12. 17.>
② 계약학과로 운영되는 석사과정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4.5.30.>

제27조 (이수과목) 모든 학생은 과정별 교과과정표에 따라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2007. 12. 17.>

제28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Global MBA과정은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3, 2018.04.04., 2009.10.01., 2008.10.01, 전문개정 2007. 12.

17>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소속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본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30.>

제29조 (학점인정) ① 강의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학점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교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교내 관련 규정에 따라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통산 15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의 세부 내역으로 심화학습과정(Concentration)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2008.10.01, 신설 2007. 12. 17.>

제30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04. 12.>

제6장 상 별

제31조 (포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2.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3.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제32조 (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2010.02.22., 2009.04.28>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1. 수업을 방해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친 자
2. 본 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기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7장 보 칙

제34조 (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35조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 본 학칙 시행에 따라 구 경영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경영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글로벌엠비에이과정 시행세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시행세칙,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시행세칙, 경영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성적우수자 표창 지침은 이를 폐지하되, 기존의 경영대학원으로 입학한 자가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시점인 2008.8.31까지는 이를 존치하여, 경영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기존 학생의 수업권은 유지한다.

(3)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2항, 제25조, 제28조 1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2항, 제9조, 제25조~제28조, 제30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제5조는 개정일부터, 제28조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제30조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제22조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2조는 2009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 제9조는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부터 시행한다. 제25조의 제1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제22조 제1항 제1의 1 단서조항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4항(신설), 제3조 2항(신설), 제5조의 2(신설), 제9조 2항(신설), 제10조 2항(신설), 제16조 2항(신설), 제18조 2항(신설), 제19조 3항(신설), 제24조 2항(신설), 제25조 4항(신설), 제26조 2항(신설), 제28조 2항(신설))은 계약학과 관련 규정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7조의2, 제30조의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2조 제1항 제1호 가록부터 나록)은 201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록은 2015학년도 가을학기 이전 입학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조항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2)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9조 제2항, 제4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경과조치)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이전에 경영대학원에서 제작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되, 졸업을 위해서는 재입학 시점의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14)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5조 제2항, 제7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3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입학 후 자원퇴학으로 제작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되, 졸업을 위해서는 재입학 시점의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05.25.>

(16) (시행일) 본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